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
2019. 12. 6(금) 10:00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
(복지교육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0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(안)

1. 개 관

이 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 3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주재원은 자활근로사업 수익이며,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.

2.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[단위 : 천원]

2019년도 말 조성액 (A)	2020년도 조성계획			2020년도 말 조성액(A+B)
	수 입	지 출	증 감 (B)	
897,259	28,600	197,700	△169,100	728,159

○ 수입계획

- 기타사업수입 10,000천원
- 공공예금 이자수입 15,000천원
-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,600천원

○ 지출계획

- 사무관리비 700천원
- 사업보조비 47,000천원
- 융자금 150,000천원

3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

전입금 4억원으로 시작하여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자활근로 사업 수익금을 운용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으며,

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8억 9,725만 9천원임.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

수입액으로 자활근로사업수익 1,000만원, 공금예금이자수입 1,5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60만원으로

총 2,860만원이며,

지출은 자활사업 민간 융자금 1억 5천만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비 4,700만원, 일반운영비 등 7십만원으로

총 1억 9,770만원입니다.

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2,815만 9천원임.

- 2020년도 자활기금사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 융자금 대여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, 실시기관 기능보강비 등에 대하여 운용방향을 수립하였으며,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[시행 2019. 10. 24.] [법률 제6367호, 2019. 4. 23, 일부개정]

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. <개정 2019.1.15>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 <개정 2019.1.15>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2.2.1.]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[시행 2019. 10. 24.] [대통령령 제30124호, 2019. 10. 15., 일부개정]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적립금액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9. 7. 16.]

제26조의3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5.4.20.>

1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3.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
4.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
5.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
6. 기금의 운용수익

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·도에 보조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1.9.8.]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<개정 2012.6.12., 2015.4.20.>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[전문개정 2011.9.8.]

제26조의5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 <개정 2015. 4. 20., 2019. 7. 16.>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9. 8.]

제26조의6(이익 및 결손의 처리)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9.8.]

제26조의7(기금의 지도·감독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·감독할 수 있고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 및 관할 시·군·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·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9.8.]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
11.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
12.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기금운용·관리)

-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-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,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 1. 금융기관에의 예치
 2. 국채, 공채,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
 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
 4.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·기관·단체